

● 제28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22.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492

## I. 결산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18. 5. 31.
- 회부일 : 2018. 6. 11.

## II. 결산 현황

###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 2. 세출결산

#### 가. 시장비서실

-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의 세출 예산현액은 3억 7,130만원으로, 이 중 3억 1,409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722만원(불용률 15,4%)임.

<표 1>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계	371,300	314,085	0	57,215	1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64,612	0	15,388	19.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45,273	0	41,827	14.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

나. 정무부시장실

- 2017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780만원으로, 이 중 1억 9,725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5만 3천원으로 불용률은 0.28%임.

<표 2> 2017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계	197,800	197,247	0	553	0.2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3,054	0	546	0.2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193	0	7	0.17

### 3. 세출예산 집행내용

- 가. 예산 이용 : 없음.
- 나. 예산 전용 : 없음.
- 다. 변경 사용 : 없음.
-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 마. 다음연도 이월액 :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결산 총괄

- 시장 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 추진 관련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 비서실과 대국화·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무부 시장실은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sup>1)</sup>를 각각 편성·집행하고 있음.
- 시장비서실은 2017회계연도 업무추진비(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총 3억 7,130만원 중 3억 1,409만원을 지출해 집행잔액 5,722만원을 남겼음(불용률 15.4%).
  - 업무추진비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1,539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6%(4,183만원) 등임.
  -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률은 18.4%포인트(37.6% → 19.2%) 감소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불용률 역시 각각 9.9%포인트(24.5% → 14.6%)와 0.3%포인트(0.3% → 0%)감소했음.
- 과거 높은 수준의 불용률을 보였던 시장비서실의 예산 집행은 (2013년 34.9%, 2014년 40.9%)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7회계연도는 15%대 수준까지 떨어졌음.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됨.

〈표 3〉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책추진	80,000*	15,388 (19.2)	103,000	38,746 (37.6)	103,000	34,054 (33.1)
기관운영	287,100	41,828 (14.6)	283,800	69,649 (24.5)	287,100	67,448 (23.5)
부서운영	4,200	-	4,200	13 (0.3)	4,200	74 (1.8)
계	371,300	57,215 (15.4)	391,000	108,408 (27.7)	394,300	101,576 (25.8)

\*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16년 예산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sup>2)</sup> 통보(2015.4.23.)에 따라 그동안 부적정 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43억원을 2017년부터 5년간 분할해 연간 8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임(참고자료: 감사원 시정요구서).

- 정무부시장실은 2017회계연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부서운영) 총 1억 9,780만원 중 1억 9,725만원을 지출(집행잔액 55만원)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음(불용률 0.28%).
  - 업무추진비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28%(5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17%(7천원)임.
  - 2016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률은 0.1%포인트 (0.18% → 0.28%) 증가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불용률은 5.89%포인트(6.06% → 0.17%) 감소했음.

2) 2010~2014년 서울시가 본청 4급 과장과 5급 팀장에게 각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부정적인 집행으로 판단 후 감사결과를 통보했음.

<표 4>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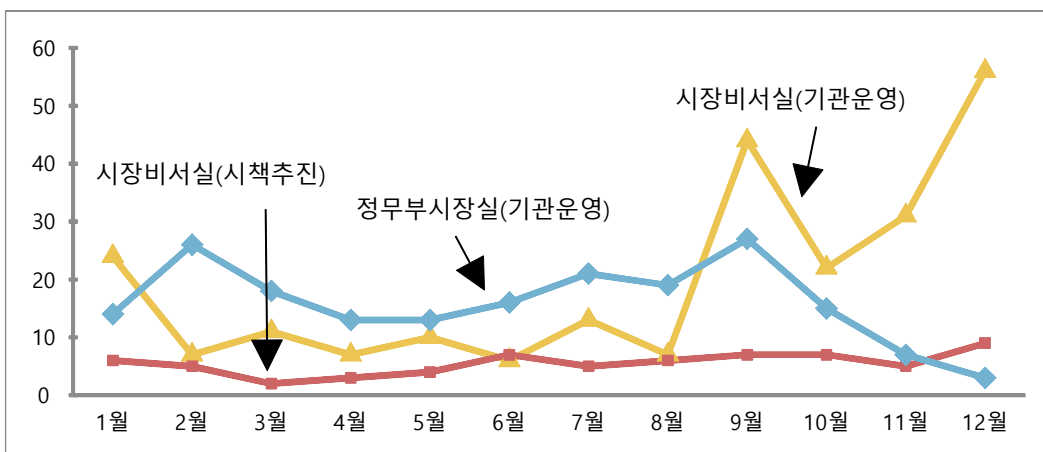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관운영	197,600	546 (0.28)	193,600	355 (0.18)	193,600	5 (0.003)
부서운영	4,200	7 (0.17)	4,200	254 (6.06)	4,200	6 (0.153)
계	197,800	553 (0.28)	197,800	609 (0.31)	197,800	11 (0.006)

-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 그러나 양 기관의 월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시장비서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몰아쓰기 양태를 보이거나, 정무부시장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평소보다 대폭 감소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향후 업무추진비 사용은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로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집행 실적을 파악해 연도 말에 과도한 예산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2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2017회계연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시장비서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률이 2016회계연도보다 각각 18.4%포인트와 9.9%포인트 감소한 것은 예산 편성 목적과 취지를 살려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연도 말에 이르러 예산이 남아 몰아쓰거나(시장비서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반대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아 평소에 비해 대폭 줄이는(정무부시장실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원래 쓰였어야 할 곳에 집행되지 못했을 우려가 제기되므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함으로써, 시책 추진 업무와 기관 운영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감 사 원

### 시 정 요 구

제 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sup>1)</sup>(행정자치부 훈령, 이하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sup>2)</sup>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위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가 확인되면, 그 지출금액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부세<sup>3)</sup> 감액 등을 할 수 있고,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제2호 관련 [별표 2] “업무추진비” 7.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사유로 감

1) 행정자치부 훈령 제151호(2009. 9. 30.), 이후 매년 새로운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업무추진비·지방보조금·일속직비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경비)을 미리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도록 함

3) 2015년 서울특별시 본청의 지방교부세 예산은 101,225백만 원

액된 지방교부세의 5배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총액을 삭감<sup>4)</sup>하도록 되어 있다.

##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제2호 관련 [별표 2] “업무추진비” 1.에 따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예산통계목: 203-01)는 시·도 본청의 경우 국장급 이상<sup>5)</sup> 부서장을 대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과장(4급)<sup>6)</sup>이나 별정직(5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를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가. 정무수석비서관<sup>7)</sup> 등의 경우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5급 상당(계약직 가급)인 소통특별보좌관 및 정무조정실장의 업무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범위와 유사하다는 사유로 기획조정실장에 상당하는 업무추진비 24,200,000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표 1]과 같이 5급 상당의 비서관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추진비 계 121,000,000원을 부당하게 편성<sup>8)</sup>하여 계 88,223,718원을 집행하였다.<sup>9)</sup>

### **[표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정무수석비서관 등)**

(금액단위: 원)

- 
- 4)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0. 7. 30. 행정자치부 훈령 제181호)부터 적용
  - 5) 시·도에서는 시장·도지사 및 부시장·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편성 가능
  - 6)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본청 4급 과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불가’로 명시되어 있음
  - 7) 위 관서에서 국회, 시의회,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정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위 관서에서 불인 직책명으로서 직제규정에 따른 정식직위가 아님
  - 8) 2011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5급인 정무조정실장에게 기획조정실장에 상당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아니함
  - 9) 2015년도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예산액	24,200,000	-	48,400,000	24,200,000	24,200,000	121,000,000
집행액	23,919,548	-	23,331,560	21,006,780	19,965,830	88,223,718
비고	정무조정실장	-	정무조정실장 소통특별보좌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나. 본청 과장(4급)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는 본청 4급 과장을 대상으로<sup>10)</sup> [표 2]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 1,870,820,000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편성하여 1,631,940,821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본청 4급 과장 119명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 383,180,000원(1인당 3,220,000원)을 편성하였다.

[표 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본청 4급 과장)

(단위: 명,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2015년
인원	117	110	116	119	119	581	119
예산액	376,740,000	354,200,000	373,520,000	383,180,000	383,180,000	1,870,820,000	383,180,000
집행액 <sup>10)</sup>	246,003,747	293,445,284	339,030,587	376,016,042	377,445,161	1,631,940,821	-

주: 기획담당관, 경제정책과 등 주무 부서의 경우에는 실·국장과 과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총액으로 배정·집행함에 따라 과장만의 집행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집행률(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액/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에 따라 본청 4급 과장의 집행액(3,220천 원/인×집행률) 산정

10)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에서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위 관서의 본청 4급 과장에 대하여 연 3,220천 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2001년도 이후에는 특례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위 관서에서는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2014. 4. 22 본청 4급 과장에 대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구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함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제2호 관련 [별표 2] “업무추진비” 4.에 따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예산통계목: 204-01, 이하 “직책급”이라 한다)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급에 따라 월정액(1급 보조기관: 월 700,000원, 5급 보조기관: 월 100,000원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기구·정원 규정”이라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관서 본청에는 실·국·본부, 과·담당관을 행정기구로 설치하고, 보조기관인 실장·국장·본부장, 과장·담당관(일반직 4급 이상<sup>11)</sup>)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 10. 23. “지방행정조직의 계(係)제 폐지<sup>12)</sup>에 따른 조직운동 지침”을 서울특별시 등 각 시·도에 시달하고, 과 내의 팀장(담당)은 인사·조직법규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이나 직위·직명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며, 위 관서를 제외한 경기도 등 15개 시·도에서는 5급 팀장에게 직책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sup>13)</sup>

11) 기구·정원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에 따르면 위 관서의 과장·담당관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12) 구 기구·정원 규정이 1998. 8. 31. 개정되면서 행정기구였던 “계”가 폐지되었고, 위 관서에서 1998. 8. 12 「서울특별시 직제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과내 ‘계’의 설치 및 ‘계장(팀장)’의 직급을 규정한 제22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전부 삭제함에 따라 5급 팀장은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되었음

13) 위 관서를 제외한 경기도 등 15개 시·도에서는 5급 팀장에게 직책급을 편성한 사례가 없고(2014년),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에서는 부서원인 5급 팀장에게 직책급을 편성·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구·정원 규정 제20조제5항 관련 [별표 6]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에 따라 사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보조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본청의 팀장(5급), 별정직(4·5급) 비서관<sup>14)</sup> 등에게 직책급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년도에 본청의 5급 팀장 602명에게 5급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월 100,000원의 직책급을 지급하기 위해 722,4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571명에게 계 3,428,400,00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하여 3,471,816,54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도 757,200,000원을 편성하였다.

[표 3] 직책급 편성 내역(본청 5급 팀장)

(단위: 명,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2015년
인원	516	562	575	602	602	571.4 (평균)	631
예산액	619,200,000	674,400,000	690,000,000	722,400,000	722,400,000	3,428,400,000	757,200,000
집행액 <sup>*)</sup>	669,141,200	670,951,490	658,722,880	715,359,080	757,641,890	3,471,816,540	-

주: 전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시점의 지급 인원 차이로 2010년도와 2014년도의 직책급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 다만, 본청 직책급 집행총액(시장~5급 팀장)이 직책급 예산총액을 초과하지는 아니함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4년 8월 별정직 5급인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 AL에게 1급(보조기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700,000원의 직책급을 지급하는 등 직책급을 받을 수 없는 별정직 4·5급 비서관인 AL 등 15명에게 2014년 6월부

업소·출장소의 보조기관은 기관장, 차장, 부장, 과장·담당관(5급)으로서 사업소 등의 5급 과장에게는 직책급 지급이 가능함

14)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서장급 이상의 보조기관에게 직책급을 편성할 수 있고 별정직 비서관은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직책급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터 2014년 12월까지 계 27,410,320원을 채무국에 편성된 직책급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1항” 및 “2항”의 내용 및 [표 4]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91,820,000원과 직책급 3,428,400,000원, 계 5,420,220,000원을 부당하게 예산편성하여 계 5,219,391,399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3,180,000원, 직책급 757,200,000원, 계 1,140,380,000원을 편성하였다.

[표 4]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부담 편성·집행 내역

(금액 단위: 원)

구분		부담 편성액		부담 집행액
		2010-2014년	2015년	2010-2014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무수석비서관 등	121,000,000	-	88,223,718
	본청 과장(4급)	1,870,820,000	383,180,000	1,631,940,821
	소계	1,991,820,000	383,180,000	1,720,164,539
직책급 업무추진비	본청 팀장(5급)	3,428,400,000	757,200,000	3,471,816,540
	비서관(4·5급)	-	-	27,410,320
	소계	3,428,400,000	757,200,000	3,499,226,860
계		5,420,220,000	1,140,380,000	5,219,391,399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미협의기구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부적정

기구·정원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및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관서 본청에 설치할 수 있는 3급 이상 담당관의 수는 13개<sup>15)</sup>로 되어 있고, 3급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 없이 기구를 설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3급 이상 기구(이하 “미협의기구”라 한다)에 합법적인 행정기구와 똑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sup>16)</sup>

15) 2014. 12. 1. 현재 13개 담당관이 모두 설치되어 있음(한시기구 제외)

16)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정식 직제로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실·국장에 대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표 5]와 같이 2011년도에 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설치한 교통운영관 등 9개의 3급 이상 미협의기구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 75,900,000원을 편성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 287,100,000원을 예산편성하여 271,546,655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도 교통운영관 등 11개의 3급 이상 미협의기구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 69,22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 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교통운영관 등 미협의기구)

(단위: 개,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2015년
미협의기구	교통운영관 등 9	교통운영관 등 9	교통운영관 등 11	교통운영관 등 12	-	교통운영관 등 11
예산액	75,900,000	66,000,000	79,200,000	66,000,000	287,100,000	69,220,000
집행액 <sup>주)</sup>	59,833,885	64,738,870	76,130,370	70,843,530	271,546,655	-

주: 주무 부서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률(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액 / 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에 따라 미협의기구에 대한 집행액 산정 ([표 2]의 '주'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위반되게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한 본청 4급 과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3,180,000원, 본청 5급 팀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757,200,000원, 계 1,140,380,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 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위반되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거나 위법한 임의기구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다는 의견 제시